

# 한화포레나 유성 1단지 임차인 모집공고(공공지원민간임대)



※ 본 아파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7.03.(금)]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 본 주택의 임대무기간은 10년이며 임대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임대무기간(10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시거나 상담전화(☎042-822-2033), 홈페이지(<http://www.forenayuseong.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한화포레나 유성 1단지 내 상담전화(☎042-822-2033)를 통해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유의 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주식회사 평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 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및 시행규칙 14조의11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경우 퇴거요인(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평정'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2026.07.03.(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7.03.(금)]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가.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나. 특별공급 대상자
    - ① 청년 : 만19세 이상이면서 만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②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7.03.(금)]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2018.12.11.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않아야 함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특별공급 청년 자격을 갖추어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후 혼인하여 같은 신혼부부 임차인 자격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 자격을 갖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공고시점 기준)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 주택소유로 봅니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와 달리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당첨자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7.03.(금)]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단, 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단, 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시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비고3)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및 소득, 청년 특별공급의 연령 및 소득, 고령자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의 경우 자격 요건상의 기준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청약Homer(한국부동산원)에서 가능하며, 당사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 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현장 접수 불가)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진행합니다.

• 특별공급 접수 및 당첨자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잔여세대 세대수는 향후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후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항의 규정[임차인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무주택세대요건)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를 적용합니다.

- 본 주택은 임대유기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주택도시보증금의 취급기관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에 본 주택의 부동산에 설정 및 신탁 등을 진행함에 있어 임차인은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계약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며 이에 따라 사용승인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등기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부지(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와 주택도시보증금과 관련한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임차인은 입주 시 보존등기와 주택도시보증금 설정등기 등 준공 후 관련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 업무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에 경우에는 세대원 전출처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미전출 시 입주가 불가함)
-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고자 하는 동·호수가 동일 타입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 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본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공급/일반공급)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당첨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주택은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의 중복입주에 따른 퇴거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06.01)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과 - 21930호[2026.07.02.(목)]** 임차인 모집공고 신고수리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830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1~34층 11개동 총 1,029세대 중 [금회 157세대(특별공급 48세대(청년 20세대, 신혼부부 20세대, 고령자 8세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계약 후 바로 입주가능**(잔금납부 완료시)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관리 번호	전용 면적	모델 번호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 면적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2026850010	59m <sup>2</sup>	01	59A	59.9943	19.5567	79.5510	39.9975	119.5485	-	-	-	72	72	2026년 07월
		02	59B	59.9497	20.1758	80.1255	39.9677	120.0932	-	-	-	37	37	
		03	59C	59.9943	19.5567	79.5510	39.9975	119.5485	13	5	13	-	31	
		04	59D	59.9497	20.1758	80.1255	39.9677	120.0932	7	3	7	-	17	
합계								20	8	20	109	157		

※ 실시설계 등으로 계약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청약 신청 시, 일반공급(59A,59B)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59C,59D)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타입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시된 타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이며, 임차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변경 법적사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타입 표기안내

주거전용면적(m <sup>2</sup> )	59.9943m <sup>2</sup>		59.9497m <sup>2</sup>	
공급유형	일반공급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일반공급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타입	59A	59C	59B	59D

- 타입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공급안내문 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이 동일한 타입이라도 일반공급(59A,59B)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59C,59D)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본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임대보증금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공급유형	타입	공급세대수	동	호	임대보증금 / 납입시점			월 임대료
					총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59C	25	101동	1~25층 1호 라인	181,900,000	18,190,000	163,710,000	-
		6	101동	2~7층 3호 라인	181,900,000	18,190,000	163,710,000	-
	17	101동	1~17층 2호 라인	180,200,000	18,020,000	162,180,000	-	

### ■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공급유형	타입	공급세대수	동	호	임대보증금 / 납입시점			월 임대료
					총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일반공급	59A	16	101동	8~23층 3호 라인	203,300,000	20,330,000	182,970,000	-
		28	102동	2~29층 1호 라인	203,300,000	20,330,000	182,970,000	-
		28	102동	1~28층 3호 라인	203,300,000	20,330,000	182,970,000	-
	59B	8	101동	18~25층 2호 라인	201,400,000	20,140,000	181,260,000	-
		29	102동	1~29층 2호 라인	201,400,000	20,140,000	181,26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연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1호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전 임대조건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 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공통)

-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7.03.(금)] 현재 청약통장 가입여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은 반드시 해당 타입(59C,59D)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주택은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반공급 및 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모집분야		자격요건	선정방법
특별공급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7.03.(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li> <li>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li> <li>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li> <li>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 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li> <li>-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li> <li>-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li> </ul>

	<p>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p>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7.03.(금)]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 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li> </ul>	<p>-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당첨자(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li> <li>예비임차인 선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 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4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공급물량의 50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ul>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7.03.(금)]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만 65세 이상인 사람(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소득 :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임차인은 특별공급 유형별로 선정하며, 경쟁 발생 시 소득순위에 따라 예비임차인 선정 및 순번을 부여합니다.</li> </ul>

-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함)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7.03.(금)]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유형별(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타입별 대상 세대수가 상이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 소득 기준 산정

(단위: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3,813,363원	~5,866,270원	~8,168,429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110% 이하	3,813,364원 ~4,194,699원	5,866,271원 ~6,452,897원	8,168,430원 ~8,985,272원	8,802,203원 ~9,682,422원	9,326,986원 ~10,259,684원	9,906,264원 ~10,896,889원	10,485,542원 ~11,534,095원	11,064,820원 ~12,171,301원
120% 이하	4,194,700원 ~4,576,036원	6,452,898원 ~7,039,524원	8,985,273원 ~9,802,115원	9,682,423원 ~10,562,642원	10,259,685원 ~11,192,382원	10,896,890원 ~11,887,516원	11,534,096원 ~12,582,649원	12,171,302원 ~13,277,783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함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 특별공급 청약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의 전산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가 모집공고 진행 여부는 추후 결정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미계약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는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유형(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내에서 소득 순위(1~3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또한,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유형(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내에서 소득 순위에 따라 40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하고 순번을 부여합니다.
- 특별공급의 예비임차인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하여 별도 공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7.03.(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li> <li>• 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li> <li>•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하여 중복당첨 시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li> <li>•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기준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7.03.(금)]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 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li> </ul>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 방법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선정합니다.
예비임차인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당첨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타입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예비임차인 선정은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li> <li>본 공급의 예비임차인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하여 별도 공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li> <li>일반공급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li> <li>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미계약 주택)이 임차인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청약신청금(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 타입	<b>100,000원</b> (금 일십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 서비스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li> <l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은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써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거래 은행 계좌에서 출금)</li> <li>주택청약 참가은행 :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씨티,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li> </ul>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시기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대상 : 인터넷 청약자 전원(당첨자 및 낙첨자 전원)
- 청약신청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구분	환불방법
인터넷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li> <li>※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li> </ul>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 참가은행(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씨티,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서비스(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가입을 하신 분</li> <li>※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 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이어야 함)</li> </ul>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청약 시]</li> <li>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공공지원민간임대」 선택 ⇒ 청약신청하기</li> <li>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 및 타입선택 ⇒ 유의사항 확인 ⇒ 공급유형(특별공급/일반공급) 선택 ⇒ 청약자격확인 ⇒ 선정기준 입력/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li> <li>•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접속 후는 PC 청약 방법 참조</li> </ul>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청약은 PC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을 통해 청약 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공공지원)민간임대	○				○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당첨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계약자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음)

- 상기 신청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17:30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신청 전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무주택 판정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사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특별공급의 경우 신혼 및 고령자는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권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중전의「건축물」(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9.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 청약접수일정, 신청방법 및 당첨자 발표

구 분	신청 일자	신청 방법	청약신청금	당첨자 발표
특별 공급 (청년/신혼부부/고령자)	2026.07.08.(수) ~ 2026.07.09.(목) 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접수(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li> </ul>	10만원	2026.07.14.(화) 16: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www.applyhome.co.kr)
일반 공급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신청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약신청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제출, 계약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구비서류 제출	2026.07.16.(목) ~ 2026.07.20.(월) / 10:00 ~ 16:00	당사 분양홍보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830번지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108호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6.07.21.(화) ~ 2026.07.22.(수) / 10:00 ~ 16:00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며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자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부의 경우 당첨자의 배우자가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일반/특별공급)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분양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3.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4.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5.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
	○		6.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8.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9.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10. 확약서	본인	· 당사 분양홍보관 비치
특별 공급 유형별	공통 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2.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분양홍보관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3.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관련 가구원 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 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 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출산이행각서(분양홍보관 비치)
청년		○	1.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2.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	·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
		○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 "상세"로 발급
		○	4. 사실증명원	본인	·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이 없는 세대원
신혼부부	혼인 상태인 경우	○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2. 소득확인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 예정인 경우	○	1. 예비신혼부부 서약서	본인	· 당사 분양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2.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예비 배우자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전체포함"발급
고령자		○	1.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세대원 소득이 있는 경우(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모두 발급)
		○	2. 사실증명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이 없는 세대원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2. 위임장	-	· 당사 분양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4. 주민등록등본 등	배우자	· 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이 필요하며,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점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7.03.(금)] 이후 발행 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점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분양홍보관 비치) · 사실증명원 ※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접수장소 ·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 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6)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무소득자인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및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제출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비고
계약금/잔금	농협	351-1394-2850-83	주식회사 평정	-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1-101홍길동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되, 실입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기타**

■ 월 임대료 납부

- 전 타입 및 전 세대 모두 전세형 상품으로 월 임대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당해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 대상입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하여 임대사업자인 당사가 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100분의 75는 당사에서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이 상승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합니다.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증기관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30,791,700,000원	06712026-703-0001707-0001 ~ 06712026-703-0001863-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서 세부내역은 홍보관 비치자료 참조

· 보증채무의 내용(약관 제1조)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 촉진 지구에서 민간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 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약관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보증회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증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겨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 ② 보증회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 보증사고(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② "보증사고일"이란 보증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공동체 커뮤니티, 키즈카페, 스쿨버스 스테이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지하주차장, 기계 및 전기실 등

#### ■ 임대주택 매각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의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양수도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양도받는 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허가)

#### ■ 발코니 확장

- 본 임대주택은 본 공사 시 전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기본형 선택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 조건을 확인하여 공급신청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계약자에 한하여 세대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임차인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예정일 : 계약 후 바로 입주가능(잔금납부 완료시)

- 실입주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7

### 유의사항

####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제101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료, 관리비는 입주중 발급일로 부터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해당 기간 내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오백만원한도)을 유보금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임대무기기간(10년)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분양홍보관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경우 외부인 이용 가능 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임시주차가 일부 허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실제 설치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은행,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의 타 시공사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개별세대 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일부를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세대 내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 잔금 및 당월 분 임대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 청약신청 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해당 주소는 필수 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계약 시 입주자에게 별도의 용자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지는 매도청구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시공관련 문의 및 시공상 하자 관련 사항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화건설부문에서 접수를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 기간(입주 업무는 입주 후 최대 2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 후 최대 28개월) 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 A/S 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사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 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하지않기로 하며,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 공통사항

- 당 사업은 2022년 05월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도면은 분양홍보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은 홈페이지(<http://www.forenayuseong.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단지는 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속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혼합 단지(1,2단지)로, 금번 1단지(101 동, 102동) 공공지원민간임대분에 대한 주요 유의사항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셔야 합니다.
- 본 단지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여건, 민원 등에 따라 분양 홍보 자료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은 입주예정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외 기반시설(도로, 녹지, 학교, 상하수, 전기, 난방, 가스,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정리 절차 및 기반시설 공사 지연 등으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 외 학교 등 공공시설물 설립 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은 '21.3.15.「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학교용지 및 시설 기부채납협약」체결에 따라 학하초를 인근 학교부지(학하동 759)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으며,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 변경에 따라 분양 후 시설 및 규모등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관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임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 공개 후 타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분양홍보관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변지역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인접 2단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와 별개의 일정으로 분양하며 각각의 개별 사업이므로, 각 단지별 부대복리시설 및 시설물, 조경, 주차장 등의 규모, 수량 등은 각 해당 단지의 규모 및 세대수에 비례하여 계획되지 않고 서로 상이하오니 이를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개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에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구비서류 등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인 동호수 배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분양홍보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및 공용공간의 사적 점유 등의 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분양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http://www.forenayuseong.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에,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사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탑상형 지붕층 및 옥탑층, 상가 지붕층에 조경공간(식재),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생활폐기물보관시설, 기계전기실 및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 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단, 위치,형태 및 디자인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설계 및 시공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준공도서, 도급계약서, 사업계획승인도서, 공사 시방서(착공신고) 순으로 정합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 구조물 외부에 BI 및 경관 조명이 설치되며,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에, 기본 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이후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 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추후 인허가변경 시 현장 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사용검사 신청 전 「주택법」제4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의거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소음측정 시행, 법정 기준소음 이상 측정 시 해당 부위에 사업주체가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등)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방음벽(최고 35m 높이)이 설치될 경우 인접한 주거동(101동,102동)에 속한 세대는 일조 및 조망, 통풍 등에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은 실제 시공시 그 구간 및 공법, 높이,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를 넘어 그 구조를 구성하는 일부가 단지 외 부지를 점용하는 구간이 존재하고 이 구간에 따른 점용 등의 사용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부에는 옹벽 등이 설치되며, 보행로와 인접한 부위일 경우 그 단차가 발생하는 부위에 안전을 위한 난간 등이 설치되며, 그 외 단지 경계에 설치되는 옹벽 등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자의에 의한 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단지 내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외부 통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및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라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

#### ■ 주변여건

- 본 단지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 배치, 동·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D/A,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외와 인접한 주변으로 재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될 수있으며, 이에 따라 분양 시점의 주변 여건은 해당 사업 등의 건축물 신축공사 등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조 및 채광, 조망, 소음, 사생활 등의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각 사업주체를 통해 그 계획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내/외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등의 설치위치, 높이, 형상,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송전탑,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진입로, 다목적체육시설,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텃밭, 근린생활시설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동측에 위치한 2단지(공공지원만간임대주택) 인근(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82번지)에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및 휴먼 스토리(구 신생원)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 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등 설치 예정 위치(추후 변동 가능)

-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옥상층)102동, 105동, 106동, 107동
- 중계장치 설치 위치 : (지상1층) 101동, 104동, 106동, 107동, 110동, 111동 주변 / (지하2층) 106동 동전기실, 110동 동전기실, 111동 동전기실 / (지하3층) 102동 동전기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 및 동선**

- 본 아파트 내 시설물 명칭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 혼용되어 설계된 단지이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협소한 부지 특성으로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에서 진출입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합니다.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경사지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특성으로 단지 내/외부에 단차가 다소 발생하여, 이를 위해 단지 내 다수의 계단과 공용 승강기가 설치되며, 각 주거동 및 시설물의 접근 및 활용에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차량 통행에 있어 그 동선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 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모형, CG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본 아파트 지상1층 외부에 설치되며, 해당 폐기물 및 쓰레기의 수거 또한 본 아파트 지상1층 동 외부를 통하여 수거됩니다.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음식물 차량 등에 의한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차량 주출입구는 단지 동측 출입구이며, 이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로 계획되어있고, 방문자 차량 및 근생 주차장과 출입구를 겸용하기에 주차 차단기는 문주가 아닌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외부 차량이 단지 내 도로로 일부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별도의 차량 부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녹지 등)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 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비상차량(소방차)의 정차위치로 표기 및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 \* 본 계약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D/A(환기구),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옹벽, 산책로,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 \* 단지 내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외 레벨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옹벽 중 인접대지 구역 외 녹지 등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옹벽은 실제 시공시 옹벽의 구간 및 공법, 높이,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시공사에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연도, 실외기 등이 설치되며, 저층 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헬륨, D/A(환기구)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환기구(D/A, 보일러연도 등)는 환기/난방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배기가스,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지하주차장 동출입구 인근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개소, 택배함의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옹벽 등을 포함한 각 외곽 경계부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될 예정이며, 그 유지관리 의무는 본 단지에 있습니다.

## ■ 주동

- 각동의 필로티 출입구는 구조에 따라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D/A(환기구)가 각 주거동 및 조경 시설물(놀이터 등) 인근에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의 위치 및 형태와 주출입구 문주 형태, 경비실의 위치 및 형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층,호수에 따라 코어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는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레벨차로 인해 주동 전면에서 출입하지 못하고 상부 레벨의 후면에서 진입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은 단지 출입구에서 지상을 통한 접근보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접근하는 동선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설치에 따라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은 인접한 부대복리시설 및 쓰레기보관소 등과 인접하여 채광 및 조망에 있어 불리할 수 있으니 필히 전시모형 및 분양 홍보물을 통해 내용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각 타입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 주거공용면적을 각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술 배분한 값으로, 실제 각 타입별 승강기 홀 및 계단실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별 계단실과 승강기 홀에 설치되는 창호의 수량 및 개수, 형상, 재질은 주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승강기 홀에 설치 되는 창호는 채광을 위한 것으로서 개폐창이 설치되지 않으며, 인접한 세대 후면 창호와 인접하여 해당 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일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별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호에는 통풍을 위한 개폐창이 설치되나, 전 층에 설치되지 않고 5개층 마다 1개소씩 설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동별 세대 현관문과 인접한 승강기홀의 계획이 상이하고, 각 주동에 따라 일부 타입(59A,59B,59C,59D)은 현관문과 승강기 문이 직접 마주보게 근접하여 프라이버시에 불리할 수 있고 해당 계획 조정은 불가하오니 위 사항을 필히 확인 후 계약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상 레벨차로 인한 데크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각 주동별 근접한 지하주차대수와 그 이용 동선에 있어 접근성 및 편의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라인이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측뢰, 항공장애등, 태양광발전설비, 환기시설(정 화조), 연도, 통기배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것들로 인한 소음, 진동, 백연, 냄새,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의거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공통)

- 각 세대에는 싱크대 간접등, 빌트인 전기오븐, 시스템에어컨 2대가 기본 제공되고,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그릴창 개폐는 입주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 임의의 구조물 추가, 구조변경, 마감변경 등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본 단지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임의의 변경, 개량, 이용시 누수에 의한 하층의 피해등의 유지관리책임과 비용부담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주동별 결합으로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생활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 부분으로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저층세대는 공용부분 시설물(주동 출입구 캐노피등)으로 인하여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단지의 인접에 의한 일조 및 조망, 환경권 및 사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충분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 및 옹벽 설치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그 해당 시설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야외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석재류 또는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 주방, 거실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내부 마감재 (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② 일반가구 상부와 하부, 후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④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주방가구 상판은 상판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내 천정고는 거실기준 2.3m, 우물천정 높이는 2.43m이며, 실외기,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은 상이합니다.
-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등) 및 가구 등이 길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류는 다용 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 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욕실가구 등의 가구류의 경우 경첩, 서랍재,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류는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장대 설치시 내부 헤어드라이기 수납 하드웨어는 본납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동빨래 건조대 설치시 발코니 폭이 협소하여 빨래봉이 완전히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석재류 화장대 및 욕실 상판의 경우 자재 생산의 규격으로 인해 분절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경우, 발코니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쿡탑이 기본 시공되며, 가스배관은 발코니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까지만 시공됨. 가스계량기 이후 주방내부로 인입되는 가스배관은 시공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개별 인테리어 시공(줄눈, 탄성코트 등)으로 인한 하자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 천정 기계 배관 설치공간 확보에 따라 거실 및 일부 침실, 드레스룸의 커튼박스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분양홍보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 및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발코니)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에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로 인한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탁실,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결로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 및 다용도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되는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 등이 방 중심 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
- 일부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외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다용도실)의 형상에 따라 입주 후 보일러 점검을 위해서는 세탁기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다용도실)에는 건본주택에 지급품목으로 명기되어 전시되거나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납을 위한 시스템선반 및 가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폭으로 인하여 세탁기와 건조기의 병렬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하향식 피난구실에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설치 공간의 천정에 배관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다용도실)에는 세탁 및 발코니 배수를 위한 수평배관들이 노출 시공되므로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고 세탁기 및 건조기의 규격에 따라 병렬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천정높이로 인해 보일러 연도의 위치가 낮아 보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
- 우수 선흡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 세탁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닥배수구, 오수배관 입상, 수전금구류, 약세사리류, 위생도기, 환기 디퓨저 및 전열교환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내 대피공간은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설계되어 있으며, 화재시 하부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임의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하오니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실은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물건 등을 적치할 수 없으며,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피난구의 위치는 층별로 다릅니다.(층별교차 시공)
- 하향식 피난구는 하층에 필로티 또는 피트,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는 경우 시공되지 않으며, 완강기가 시공될 예정입니다.
- 하향식 피난구 커버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다용도실에 손세탁 수전은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수전 중 냉수와 결합된 스프레이건이 설치됩니다.

#### ■ 단위세대(창호/문)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 이와 인접한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창호 내측 창틀, 창짝 제조시 접합부위(연구)에 사선으로 백색라인이 노출됩니다
- 공동주택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되며, 제품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손끼임 방지 장치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마찰소음, 하드웨어 상/하단부의 틈새 및 빛의 투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방충망은 외부에 면한 창에만 설치되며 창짝 중 한쪽의 창짝에만 설치됩니다.
-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창호 및 문의 경우 발코니쪽에서 보았을 때의 창호의 면에는 별도 색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단위세대(전기/기계/설비)

-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되며, 세대 내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전기분전반)은 세대타입, 옵션선택에 따라 안방, 침실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신단자함은 세대타입, 옵션선택에 따라 현관 신발장, 팬트리, 드레스룸, 안방 및 침실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신단자함, 세대(또는 호실)분전반, 전기 배선기구류, 조명기구, 전기통신관련 마감재의 제품사양, 위치, 높이, 수량 등은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세대 및 옵션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 월패드의 카메라는 미적용되었으며, 세대간 영상통화가 지원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벽걸이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다용도실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주방가구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
- 렌지후드 환기 배관 및 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 내에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따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조명이 방 중심 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의 기능에는 승강기 호출 기능(하행만 가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는 하향식 피난구실에 설치되고, 설치 공간 천정에 배관이 노출되어 미관저해 및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에는 배관,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거실과 침실1(안방)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시행사 공사분으로 설치되며, 골조 냉매매립배관 및 매립박스는 별도로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는 주택형별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및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타입 욕실내 일부공간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나 샤워부스, 욕조 하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
- 본공사시 부부욕실의 경우 세면대 하부에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조적 가벽 또는 커버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매립형태로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 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수량, 사양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시행사 공사분)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구 하이라이트 전기쿡탑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가스배관이 주방으로 인입되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일랜드장, 화장대 등 가구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 또는 케이블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용도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하 1~2층 및 지상 1층에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 및 주출입구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층 동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입주민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를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세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이동요구, 설치거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1층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입주 업종의 종류에 따라 저층세대는 냄새,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주거동과 함께 결합된 시설이므로 일부 주거동 지상 공간은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공간으로 구분되어 함께 이용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공용부분 내 일부 공간은 일정 기간(입주개시후 30개월 내외, 단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입주관리, 신속한 하자보수 등 입주 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임대차 관련 비용 일체 포함)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 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 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골프연습장의 타석 개수는 인허가 협의 등의 결과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타석 수 축소 및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동일 업체를 선정하여 별도로 운영 예정이나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추후 시설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성되어지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 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임대차비용 포함)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은 지하 및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비주거부분 등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급배기, 환기팬,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 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시설의 옥상 또는 인근동 주변 및 동 1층 필로티 공간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아파트 공용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및 진동, 기류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옥상에는 실외기가 설치되며, 일부 근접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시선간섭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환풍,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환풍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가동시 발전기 D/A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설비업체 운용지원 무상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 입주자는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세대수 대비 무인택배함 수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차계획(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 및 택배차량이 진입 가능한 지하주차장 주행로 높이는 2.7m 이상 확보되어 있고 그 외는 2.3m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1,478대, 근린생활시설 5대 총 1,483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대수는 세대당 약 1.43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입주민 전용으로 계획되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주출입구 인근 근린생활시설 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차장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출입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각 층별로 나누어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획은 오직 충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구획으로써, 충전 이외의 일반 주차구획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비충전 점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출입부의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분양모형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계획상 기둥간격이 일정하지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시설 의 위치는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조경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 및 차도 포장재, 가로수, 외부조명 등)은 공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및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 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각종 옹벽 및 레벨차로 인한 경사지 형성으로 인해 일부 인접 구간은 조경 활동 공간이 아닌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저층부(1~5층)는 식재로 인한 일부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대상이 아닙니다.

## ■ 입면

-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 및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사인물, 장식물은 분양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 되는 옥상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축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 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DRY ARE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축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별 외장재는 저층부는 석재가 시공되나 계단실과 승강기 홀로 구성된 코어 부분은 도장이 적용됩니다.
- 각 주동별 외장 석재 적용 층수는 인접한 데크 부분 계획에 의해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데크형태의 입면(옹벽, 조경석, 토목옹벽 등의 구조물,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기/통신/IoT관련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케이블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 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신실(TPS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통신 세대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MultiPlexer 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 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홈넷서버 운용을 위한 전용IP 비용은 준공 후 6개월까지 지원함. 그 후 발생하는(인터넷 업체 변경 포함) 전용IP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무인택배, 홈넷 등 입주자 편의시설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입출차 차단기 등)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명기구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공사(ex:태양광발전공사)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한화건설 모바일 전용 APP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서비스는 준공 3년 이후, 홈넷 및 무인경비공사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요하는 유료로 전환되며, “을”은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전용 APP 서비스 중 일부는 기간사업자(통신사, 포털사, 가전사 등)의 연동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유료, 무료 서비스 내용)될 수 있습니다. (한화건설 전용 APP 미적용 시 홈넷사 제공 APP 적용)
  - 견본주택 영상의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원패스 기능은 휴대폰 및 사용 OS 버전 등 아래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기능이 휴대 폰 내에서 활성화 시에만 기능이 구현됩니다.
- ※ GPS, Bluetooth, 위치권한, 원패스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이 'ON'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휴대폰 배터리 사용량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
- ※ 최소 요구사항 : Bluetooth Version 4.0 이상 / Android : v4.3 이상 / IOS : v13.0 이상 / Galaxy S6 이상 및 Apple I-phone 6s 이상 ※ 해당 어플은 최신 상태를 유지

## ■ 기타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통신시설물(공용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 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 시 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차동 및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과 2단지 사이 통합 연결도로는 1,2단지의 관리주체가 공동의 유지관리 의무를 갖게 되며, 관리의 소홀 등으로 인사 사고 등 발생 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학교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행정청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대전 학하지구의 학교 설립 주체는 유치원·초교·중학교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이며, 지구 내 모든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교 설립 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 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는 학하초, 중학교는 덕명중학교에 배치 예정이나, 중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모든 중학교에 대하여 '선복수 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당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유입되는 고등학생은 관내 기존 고등학교에 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설립, 학급당 학생 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관청의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당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면적 등)의 변경, 교육정책의 변화 등으로 설립계획 및 학생 배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주택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적용)

구분		적용여부
건축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전동기 사용(라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마목)	적용
	절수형 설비/절수기기(바목)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가목)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나목)	적용
	조명설비(다목)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목)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마목)	적용

■ 친환경 주택 성능수준

### 녹색건축 인증서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한화포레나 유성	인증번호 : G-SEED-C-2026-0208-4
건축주 : ㈜평정	인증기관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준공일 : 2026. 02. 23.	유효기간 : 2026.03.20.~2036.03.19.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동로 676-1 번지 빌딩	
층수 : 지상34층 / 지상34층	
연면적 : 165,779.5325㎡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아이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공시시공자 : 주원하 건설부문	
공시관리자 : ㈜유탑엔지니어링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공동주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64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제2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이사장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한화포레나 유성	인증번호 : 26-유-본-14-0011
준공연도 : 20260228	평가자 : 산토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동로 676-1 번지 빌딩	인증기관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층수 : 지상34층 / 지상34층	분양기관 : 한미에너지공단
연면적 : 165779.5325㎡	유효기간 : 2036-01-28 까지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아이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공시시공자 : 주원하 건설부문	
공시관리자 : ㈜유탑엔지니어링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통신 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주)유탑엔지니어링	화성감리	(주)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2,206,565,900원	714,095,000원	739,200,000원	

■ 사업관계자 현황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상호	주식회사 평정	주식회사 한화 건설부문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중앙로 149번길 20, 302호(학하동)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장교동, 한화빌딩)
법인등록번호	160111-0505416	110111-0002959

■ 홈페이지(<http://www.forenayuseong.co.kr>)

■ 분양홍보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830번지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108호

■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042-822-2033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